

변호사 김태주 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법원로 16, 202(서초동, 정곡빌딩 동관)/전화 3478-6500/팩스 3478-8477/ktjlawyer@naver.com

발 신 일 : 2019. 10. 30.

수 신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참 조 : 문화체육과(담당: 최상문)

제 목 : 체육회 사무국 직원 수당 예산 집행 관련

위 제목에 관한 귀 구의 법률자문의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문>

- 강남구체육회 사무국 직원 수당 소급 지급이 가능한지? 불가하다면 관계 법령은 무엇인지?
- 수당의 소급 지급이 가능하다면 소급 지급 시점이 언제이고 관계 법령은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근무한 2019. 1. 1.부터 소급 지급이 가능한지? 문화체육과로 보조금 교부 신청 공문을 보낸 시점인 2019. 8. 16.부터 소급 지급이 가능한지?(미비한 서류는 문화체육과 내에서 교부결정에 대한 내부 계획 수립 후 보완하여 받을 예정) 문화체육과 내부적으로 교부결정과 관련된 계획 미수립 상태이기 때문에 계획 수립일 이후부터 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검토의견-

가. 지방재정법은 제32조의2 이하에서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는 바, 위 조항 제6조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지방보조금 교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야 할 것인바, 위 조례 제17조 제2항은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하여 지방보조금이 교부되기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한편 강남구체육회가 2019. 8. 14. 귀 구에 제출한 ‘2019년 강남구체육회 사무국 직원 수당 지급요청’ 공문과 첨부 자료에 따르면, 위 체육회는 사업기간 “2019. 1. 1.~8. 31.”, 보조사업명 “체육회 사무국 직원 수당”에 관하여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고 있는바, 사업기간에서도 명시되어 있듯이 이 건 사업의 내용은 보조금 교부 시점 이전의 일정기간 동안 강남구체육회에서 근무한 사무국 직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수당이 소급되어 지급될 뿐 사업 자체는 보조금 교부 전에 이미 시행되었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건 보조금 교부신청은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귀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라. 그러나 2018. 12.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의원 발의에 따라 2019년 귀 구 본예산에는 체육회사무국 직원 수당으로서 매월 인당 160,000원 씩 15명의 범위 내에서 12개월 간 지급하도록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항목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지방의회는 예산안 편성권자인 지자체장의 동의 없이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는 점(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 3항), 귀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는 위 조례 제17조 제2항의 구청장 승인에 관하여 절차나 방법을 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귀 구청장은 예산안 편성 과정을 통해 2019년도 회계연도 시작일인 2019. 1.

1. 이전에 매월 인당 160,000원 씩 15명의 범위 내에서 강남구체육회 사무국 직원의 수당에 관한 보조금 지급을 사전 승인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마. 따라서 2019. 1. 1. ~ 8. 31. 사이의 강남구체육회 수당 지급 사업에 관하여 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 조례 제1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2019년도 1월분부터 수당에 관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위 조례 제14조는 보조금 교부 신청시 소정의 항목이 기재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업계획서 등 미비한 서류가 있다면 이를 제출받은 이후에 보조금 교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019. 10. 30.

변호사 김 태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문화체육과 - 최상문)

귀 중